

##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뢰서

의뢰처 (사업시행처)	성명 (기관명, 대표)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	
	주소 (도로명주소)	연락처	T : F : e-mail:	
대상지역	소재지			
	면적	m <sup>2</sup>	지목	
	사업명			
	현상			
의뢰사유				
구비서류	1. 사업계획서 2. 대상지역 위치도(1:25,000) 3. 대상지역 측량도(1:5,000정도) 또는 지적도 4.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문서(해당되는 경우에 한함) 5.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			
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합니다. 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신청인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서명 또는 인)</span>  (재)대동문화재연구원장 귀하				
문의 및 연락처 : 053-628-0048(조사지원팀 최신영) 팩스 : 053-628-3646, webhard I.D : sh2171 P.W : 1234 e-mail : dd0048@naver.com				

\* 신청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, 나머지 사항들은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 
 \*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행정절차는 문화재청 전자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작성요령 -

① 의뢰처

성명 : 조사를 의뢰하고 계약하는 당사자 명시

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번호 : 의뢰처(자)의 번호로 기입, 사본 첨부

주소 : 우편 수령 가능처로 명시

연락처 : 상시 연락가능 하도록 명기

(기관이 의뢰할 경우 해당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)

② 대상지역

소재지 : 사업대상지 대표주소 명기

면적 : 사업대상지 전체면적

(진입도로, 주차장부지 등 형질변경 지역은 모두 해당)

사업명 : 추진하는 사업명 기재

현 상 : 사업대상지 현재의 상태를 말함

(나대지, 경작 중, 건물철거후 혹은 전 등으로 상세하게 작성)

③ 의뢰사유 : 지표조사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의무 시행 및 기본 지표조사 면적이 아니지만 지자체 조치 등 특수사항 기록

④ 구비서류 : 도면은 가급적 CAD 도면으로 제출

1. 사업에 대한 개략적 계획서 및 위치도

2. 대상구역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도면(지적도나 구적도 등에 사업범위 표시) 등

근거 : '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' 제6조(자료제공 등 상호협력)

① 제5조에 따라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제공 및 현장설명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 평·단면도(축척 1/5,000이상의 지적도 상에 그린 계획 도면)

2. 사업계획서

3. 기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

② 조사기관은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문화재 정보 및 지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전이라 하더라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